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01

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고용진·강득구·김경협

김교흥 • 박성준 • 박 정

백혜련 • 서영교 • 송재호

양향자 · 오영환 · 유정주

윤후덕 • 이형석 • 임오경

임종성 · 정일영 · 진성준

한준호 · 홍익표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거주자(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)는 「소득세법」에서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,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%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,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.4%로 OECD 회원국 중가장 높은 실정임.

이에 「소득세법」에 소득・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

0만원 한도,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, 현행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의4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19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6조의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86조의4(연금계좌세액공제 등)	<삭	제>			
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					
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					
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					
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					
<u>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</u>					
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					
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					
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					
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					
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					
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					
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					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					
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					
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					
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					
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					
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, 해당					
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					
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					
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					
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					

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 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 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